

EC의 對後進國政策*

韓 昇 淚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次>

I. 서 론	IV. 對 “연계” 국가를 위한 輸出所 得安定政策
II. 對 “연계” 後進國政策과 약운 协約	V. 汎世界的 對後進國政策
III. 對 “연계” 후진국 정책과 로메 協定	VI. 결 론

I. 서 론

歐洲共同體 (EC) 와 후진국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相反된 見解가 있다. 첫째는 EC 와 후진국간에 從屬關係가 존재한다는 견해인데 이것은 新帝國主義 혹은 소위 從屬論者들에 의하여 피력되고 있다. 둘째는 EC 와 후진국간의 관계가 새로운 開發協力의 模型이며 1975년에 체결된 로메協定 (Lomé Convention)이야 말로 그러한 精神의 具顯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¹⁾

EC의 대후진국 정책에 대한 이상과 같이 상반되는 견해는 植民主義의 傳

* 本論文은 원래 COMECON의 對後進國政策도 다루기로 되어 있으나 資料上の 문제로 인하여 一次的으로 EC만을 다루고 있음.

(1) 두가지 見解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Zartman, W., "Europe and Africa: Decolonization or Dependency," *Foreign Affairs*, Vol. 54, No. 2(1976).

從屬論의 立場은 다음을 참조할 것

Galtung, J., *The European Community: A Superpower in the Making* (George and Allen, London, 1973).

Coppens, H. A. J.,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Seen in Global Perspective," in Everts, P., ed., *The European Community in the World* (Rotterdam University Press, Rotterdam, 1972).

開發協力의 模型이라는 見解는 다음을 참조할 것

Brinkhorst, L., "Lomé and Further," in Alting von Geusau, F. A. M., ed., *The Lomé Convention and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ijthoff, 1977).

統에서 벗어나 協力を 通한 開發을 추구하려는 EC의 歷史的 背景을 이해 하지 않고 옳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957年 3月 15일에 조인된 Roma 條約에 의하여 벨지움, 프랑스, 西獨, 이태리,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 等 6個國은 歐洲經濟共同體(EEC)를 결성하였고 1958年 1月 1일부터 EEC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²⁾

EEC가 창설되던 당시에 會員國中에서 프랑스와 벨지움은 그때까지도 強力한 植民主義國家였으며 작은 규모이기는 하였지만 이태리와 네덜란드도 海外에 植民地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 植民地의 大部分은 EEC 形成 以後 數年內에 獨立될 것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待遇와 이들과의 關係를 經濟共同體內에서 어떻게 収容할 것이나가 프랑스에 의하여 대표되는 植民國家와 非植民會員國인 西獨間의 意見差異를 노정시켰었다.

Roma 條約을 協商하는 기간에 프랑스는 海外植民地를 EEC에 연계(associate)시키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프랑스가 이와 같은 海外植民地 연계案을 조건으로 共同市場結成을 주장하여 관철한 것은 1956年 5月에 베니스에서 열린 外相會議에서였다.

프랑스는 이와 같은 主張을 하여야 했던 充分한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는 海外植民地를 프랑스의 一部로 여기고 있었는데 EEC에서 關稅同盟을 결성하게 되면 그들을 差別待遇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첫째 이유였다. 둘째로는 프랑스는 이들에 대한 援助負擔이 매우 커고 또 이들로부터 수입하는 原料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EEC 會員國들이 援助를 分擔하여야 하며 특히 西獨의 경우는 이러한 나라들에 직접 투자를 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프랑스가 이미 투자한 社會間接資本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으며 따라서 西獨과 같은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

(2) 歐洲共同體(European Communities)의 生成과 運營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Keesing's Report, *The European Communities*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75).

A. J. C. Kerr, *The Common Market and How It Works* (Pergamon, London, 1977).

M. A. G. Van Meerhaeghe,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Longmans, London, 1966), pp. 314-362.

EC는 歐洲石炭 및 鐵鋼共同體(ECSC), 歐洲經濟共同體(EEC) 그리고 歐洲原子力共同體(Euratom) 등 獨立된 條約에 의하여 生成된 세 共同體가 1967年 7月부터 統合된 中央執行委員會를 구성하면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本文에서는 EC와 EEC를 混用하고 있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EEC 가 그 結成初期에서부터 後進國들에 대한 關心이 깊었던 것은 歷史的 理由에서였다. 이와 같이 地域的으로 制限된, 歷史的 特殊관계를 가졌던 後進國들에게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關心과 끼여야 했던 政策은 그 후 1973年 1月 1일부터 英國, 에이레, 텐마크등이 加入하여 EC가 擴大되면서 그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없도록 되었다.

特定 後進國들에 대한 地域的 水準에서의 政策은 70年代에 들어오면서 汎世界的 水準에서 後進國一般에 대한 EC의 一貫되고 統一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73年 10月 第 4 次 中東戰을 계기로 하여 石油가 武器化되고 이것이 後進國內 資源民族主義를 촉발시키면서 南北問題는 새로운 章을 열게 되었다. 1974年에 열린 유엔資源特別總會에서 「新」國際經濟秩序의樹立이 선언되고 行動計劃까지 채택되었으며 1976年에 열린 第 4 次 UNCTAD 總會에서는 「第 1 次 產品프로그램」을 채택하는 等 後進國들의 모임인 77國그룹(Group of 77)은 先進圈에 대하여 第 2 次 世界大戰의 폐허위에 구축되어 戰後世界經濟를 이끌어 온 國際經濟秩序는 낡았으며 따라서 根本的으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77個 그룹의 主張을 EC가 外面하거나 無視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世界的 水準에서의 對後進國政策은 1970年代 EC의 苦心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문에 EC의 對後進國政策은 前殖民地들로서 特別한 關係에 있는 後進國들에 대한 政策과 南北問題 접근에 있어서 後進國 一般에 대한 政策으로 區分하여 論할 필요가 있다.

II. 對連繫後進國政策과 야운데協定

Roma 條約이 체결되기 이전에 EEC 形成 交涉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Spaak 報告書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곧 獨立하게 될 殖民地의 處遇에 대한 言及을 하지 않았으며 이런 때문에 交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殖民地를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던 프랑스는 EEC 가 전체적으로 會員國의 殖民地와 特別한 關係를 設定하지 않는 한 EEC에 加入할 수 없다는 條件을 내세

웠다.⁽³⁾ 또 이러한 要求는 곧바로 프랑스 植民地에 대한 差別的 優待措置를 의미하므로 英聯邦諸國이나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中要한 貿易上利害가 걸려있던 西獨이나 네덜란드 등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로 Roma 條約附則으로 第IV部가 생겨나게 되었다.⁽⁴⁾

이와 같이 附則第IV部에 의하여 EEC 와 連繫(Association)를 맺게 된 植民地들이 1960年부터 1963年 사이에 독립을 하게 되고⁽⁵⁾ 또한 EEC 가 共同農業政策을 수립하여 歐洲內 農產物과 競爭하는 植民地 農產物의 처리가 적지 않게 문제를 제기하였다.⁽⁶⁾

따라서 1957年에 연계관계가 규정된 施行協定은 1962年에 그 효력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었고 Roma 條約 자체가 植民地들이 곧 獨立하리라는 예상하에서 조인되었던 까닭에 다른 형태의 연계방안이 이미 모색되어 있었다. 다만 당시의 식민지였던 신생국들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보아 EEC 와의 완전한 자유무역은 불가능하였었는데 이것은 신생독립국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소득세로부터의 세입이 미미하였고 오히려 관세가 경부세입의 대중을 이루었다는 이유와 신생독립국들은 초기에 보호정책을 채택해서라도 제조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은 때문이었다.

EEC 와 신생독립국들은 1963年 7月 카메룬의 首都 야운데에서 1964年 6月부터 발효될 第1次 야운데 協定(Yaoundé Convention)을 체결하였다.⁽⁷⁾

(3) D. Swann, *The Economics of the Common Market* (Penguin, London, 1978), pp. 296-7.

W. Barnes, *Europe and the Developing World* (Chatham House, London, 1967), p. 5.

(4) Roma 條約의 Appendix IV에서 규정하는 海外地域(overseas territories)은 크게는 프랑스領西아프리카, 프랑스領赤道아프리카, 프랑스信託統治地域으로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토크랜드등과 벨기에領콩고와 루안다 우룬디, 이태리信託統治下의 소말리아와 네델란드의 뉴기니아 등이며 네델란드의 안틸레스는 1964年에 첨가되었다.

(5) 이때 獨立한 植民地들은 네델란드領植民地와 아주 작은 領土를 가진 몇몇 프랑스領植民地였는데 이들은 프랑스의 一部로 간주되고 있었다.

(6) 이때 경쟁관계에 있던 農產物은 네델란드 및 佛領西印度諸島에서 생산되는 사탕나무가 모든 會員國의 사탕나무와 경쟁하였고 알제리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農產物(대추야자제외)은 이태리 및 南部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7) 第1次야운데 協定은 Roma 條約 238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EEC 와 18個國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카르연계 국가(Associated African States and Madagascar)간에 이루어졌다. 第1次 야운데 協定의 經濟的 歸結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Curzon G. and Curzon V., "Neo-colonialism and the European Community," *Yearbook of World Affairs* (1971)

Peter Coffey,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f the EEC* (MacMillan,

第1次 야운데 協定은 1969年에 효력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었다. 아프리카 및 마다카스카르 等 연계국가에 대한 EEC 共同政策의 수립에 있어서 특히 프랑스와 西獨間의 이해는 더욱 대립되어 있었으나 아프리카의 연계국가들은 경제원조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는 主張과 전제위에 協定을 更新延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壓力下에 1969年 7月 야운데에서 協定을 更新하고 1971年 1月부터 발효될 第2次 야운데 協定을 체결하였다.

第1次 야운데 協定이 교섭단계에 있을 때 英國이 EEC 加入을 협상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英聯邦에 속하는 後進國들의 待遇問題가 중요한 爭點中의 하나였다. 英國의 加入努力이 1963年 1月 프랑스의 反對로 좌절이 되었지만 EEC는 英聯邦 後進國에 대해서는 깊은 關心을 표시하였고 특히 西獨과 네델란드는 야운데 協定이 풍기는 殖民地的 色彩를 없애기 위하여 이들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였다.⁽⁸⁾ 그리하여 1963年 4月에 EEC는 주로 이들을 겨냥하면서 非연계 後進國들에 대하여 意思宣言(Declaration of Intent)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의 글자는 비연계 후진국들은 야운데 協定에 加入하든가 Roma 條約 238條에 의거 연계협정을 체결하든가 혹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든가 三者擇一을 하라는 것이었다.⁽⁹⁾

이러한 EEC側의 요청에 부응하여 나이제리아와 케냐, 탄자니아 및 우간다 等 東아프리카 三國은 第2의 代案을擇하였다. EEC와 나이제리아는 1966年 7月에 라고스協定(Lagos Convention)을 체결하였고 1969年 9月에 EEC와 東아프리카 3國은 아루샤協定(Arusha Convention)을 체결하여 1971年 1月부터 발효하도록 되었다.⁽¹⁰⁾

London, 1976) pp. 3-8.

야운데協定의 貿易創出 및 轉換의 効果에 관한 研究는 특히 다음을 참조할 것.

M. E. Kreinin,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in B. Balassa, ed.,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1975), pp. 342-354.

(8) Dodoo, C. and Kuster, R., "The Road to Lomé," in Alting von Geusau, F. A. M., ed., *The Lomé Convention and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ijthoff, 1977), pp. 24-25.

(9) Commission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Seventh General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Community*(1964), pp. 225-227.

(10) Lagos 協定은 EEC會員國과 歷史의 관계가 적었던 나이제리아가 EEC와는 정치, 경제적 관계의 진밀성을 결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맺음으로써 英聯邦後進國과 EEC와의 최초의 協定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Lagos 協定은 비아프라內戰의 소용돌이 속에서 프랑스가 비아프라를 支持하는 때문에 나이제리아가 批准을 하지 않았다.

第1次 및 2次 야운데協定과 아루샤協定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아프리카국가의 열대농산물(예로 코코아와 바나나)은 구주공동시장에 관세없이 얼마든지 수입된다.
- (2) 경쟁농산물이 EEC 내에서 생산되는 설탕이나 오렌지 등은 無關稅부터 가 있으며 제한없이 输入되지는 못한다.
- (3) 연계된 후진국으로부터 EEC에 수입되는 제조업제품과 토산품, 예로 가죽제품이나 금속제품등은 쿠터의 제약을 받을 때도 있으나 最惠國 대우를 받으며 그 대신 EEC로부터 후진국으로 수출되는 제조업 제품은 最惠國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입 90% 이상이 식민지宗主國으로부터 수입되었고 그들로부터 관세를 거두었다).
- (4) EEC會員國市民은 누구나 연계된 국가에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교역을 할 수 있다(즉 西部 및 赤道 아프리카아에서 차지했던 프랑스의 獨占的 위치가 잠식되기 시작했다).
- (5) EEC會員國들은 雙務的으로 계속 후진국 원조를 계속하며 EEC共同의 원조(무상원조 및 저리장기차관)는 도로, 철도, 교량,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와 같은 개발사업에 투입된다.
- (6) 그외에도 EEC 와 후진국간의 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III. 對 “연계”후진국 정책과 로메協定

1973年 1月 1日부터 EC가 英國, 에이레 및 멘마크의 加入으로 擴大되면 서 아프리카, 카리브海 그리고 太平洋地域內의 前殖民地國(Africa,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 States : ACP)들과 새로운 協定을 체결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로메協定(Lomé Convention)이다. Lomé協定에서는 아시아국가들을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생산하는 제조업품(특히 섭유제품)이 EC市場을 석권하고 또 이를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援助의 규모가 EC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1975年 1月 토고의 首都 로메(Lomé)에서 EC와 ACP의 46個國間에 Lomé協定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약 2億 6千萬名의 유럽人과 2億 7千萬名의 ACP諸國의 사람들을 둘러싸는 방대한 經濟圈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다. ⁽¹¹⁾ 이와같이 5億 3千萬名의 人口를 포함하고 55個國을 포괄하는 Lomé協定은 체결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즉 1973年 7月 브리
셸會義로부터 1年 7個月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¹²⁾ 이 協商過程의 特
징은 ACP 國家들이 나이제리아를 中心으로 단결하여 英語圈과 佛語圈이
共同戰線을 꾸었던 사실이다. ⁽¹³⁾ 英佛語圈間의 보이지 않는 알력을 감안할
때 후진국들이 이처럼 단결할 수 있었던 사실은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특징은 ACP 諸國들이 연계, 즉 Association이라는 用語의 표현에 반
대하였는데 이들은 이 용어가 先後進國間의 從屬關係를 認定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¹⁴⁾ 셋째로는 ACP 諸國들은 EC 諸國과의
互惠主義를 반대하고 EC 諸國의 產品들에게 양도하는 逆特惠(Reverse Pre-
ference)를 반대하며 EC는一方的으로만 特惠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체결된 로메協定은 以前에 체결되었던 다른 協定들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差異點이 있다.

첫째, 연계된 후진국이 더 많아졌으므로 열대농산물을 수출하는 ACP 국
가간에 경쟁이 더욱 격화되었고 따라서 쿼터제도가 더욱 많이 이용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ACP 국가는 개별적으로 EC에게 產品의 供給을 보장하는 한, 이
러한 산품의 수출로부터 그들 소득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로메 協定에 모든 前植民地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

(11) ACP 諸國은 西아프리카 15個國(다호메, 감비아, 가나, 기니아, 기니아비씨
우, 아이보리코스트, 리베리아, 세네갈, 시에라레온, 어퍼볼타, 토고), 中央아
프리카 9個國(보룬데이,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쟁드, 콩고, 赤道기니아, 가봉,
루안다, 자이제), 東아프리카 13個國(보쓰와나, 에치오피아, 케냐, 래소토, 마
나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시언스, 소말리아, 수단, 수와지랜드, 탄자니아, 우간
다, 잠비아), 카리브海 6個國(바하마, 발바도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마이
카, 트리니다드토바고), 太平洋 3個國(페지, 통가, 험사모아) 등을 포함하고 있
다.

(12) 協商過程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Dodoo and Kuster, *op. cit.*, pp. 22-36.

(13) Gruhn, I., "The Lomé Convention; Inching towards Interdependence," *Inter-
national Organizations*, Vol. 30, No. 2(1976).

(14) Cosgrove-Twitchett, C., "From Association to Partnership," in Twitchett, C.,
ed., *Europe and the World*(Europa Publications, 1976), pp. 123-124.

진 바 있다. 예로 1962年까지 프랑스의一部였던 알제리아, 1956年까지 프랑스의保護領이었던 튀니지아와 모로코는 야운데協定이나 로메協定의 체결당사국이 아니었지만 프랑스와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EC 전체와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알제리아의 경우 프랑스와의協定은 알제리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대가로 원조 및 교육과 기술분야에서 각종의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프랑스에서 알제리아인들이 거주하고 균로할權利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EC와의 협약도 무역상 특혜조치를 받고 있으나 균로자들이 프랑스에서와 같은 권리는 갖지 못하고 있다. 北아프리카의 농산품은 南部유럽의 產品과 크게 경쟁상태에 있으므로 쿼터등에 의하여 규제받고 있으나 프랑스는 포도주의 大量생산국이면서도 북아프리카로부터 포도주를 많이 수입해 주고 있다.

EC는 일반적으로 다른 후진국들 특히 南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후진국들에게 관심을 크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는 유럽에 가까우며 유럽人们은 이들을 지원해 주려는 도덕적 책임감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은 人口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이 원조를 끝없이 하더라도 효과가 나지 않는 나라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보고 조금만 더 원조를 계속한다면 생활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C에서는 라틴아메리카는 주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미국의 책임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C會員國이 개별적으로나 혹은 EC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援助의 約 4分의 3이 ACP國家에 投入되고 있다. 援助는 대부분이 條件附援助인데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은 形態로 제공된다. 첫째는 무상원조이며 둘째는 低利차관이다. EC의 경우에 이 援助는 歐洲開發基金(European Development Fund)에서 관리하고 있다. 歐洲開發基金의 규모는 다음 表와 같다.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C의 개발기금은 로마條約에서 5억 8千餘萬u.a.(當時 u.a 는 美貨 1 弗相當)로 책정되었으며 第1次 야운데協定기간에는 이것이 名目上으로나마 37.7%의 증가를 보였고 第2次 야운데協定기간에는 다시 25%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로메協定기간에는 이것이 35億5千萬u.a.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表 1〉 歐洲開發基金

(單位 100萬 u.a.)

期 間	1959-63	1964-69	1970-74	1975-80
協 定	로마條約	第1次야운데協定	第2次야운데協定	로메協定
基 金	581	800	1,000	3,550

資料 : EC, *Statistical Office*.

註 : (1) 歐洲投資銀行이 제공한 資金援助 포함함.

(2) u. a.는 EC의 計算用單位이며 美貨 1弗을 약간 上迴함.

EC 원조의 세째 형태는 후진국으로부터 관리나 전문가 기타 사람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시키는 기능이다. 비록 이러한 연수에 투입되는 원조의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수대상자들이 아프리카지역에서 중요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것이 아프리카의 장래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IV. 對연계국가를 위한 輸出所得安定政策

Lomé協定의 두가지 特徵 가운데 하나는 EC가 ACP 국가들의 산품수출로부터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후진국, 특히 아프리카 및 열대지방에 위치한 후진국의 특징은 그들의 국민경제가 특정한一次產品의 輸出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輸出價格의 심한 변동은 輸出所得의 불안정한 변동을 연유시키며 따라서 국민소득의 변동이 크게 영향받게 된다. 그러므로 후진국들은 輸入國인 선진권에 대하여一次產品의 輸出價格 및 輸出所得의 安定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 ACP國家의一次產品輸出集中度를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表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6個國에서 主要一次產品 2~3個品目이 총수출에 점하는 비중이 90%以上을 占하고 있으며 ACP 국가 가운데서 그 비중이 50% 미만이 되는 것은 다이아몬드, 철광석 그리고 커피를 수출하는 시에라레온뿐이다.

따라서 로메協定은 이러한 ACP 제국경제의 수출依存性을 고려하여 수출소득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켜 ACP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

〈表 2〉 ACP 國家의 一次產品輸出集中度

국 가	주 요 품 목	총수출에 점하는 一次산품의 比重	년 도
감 비 아	땅콩, 땅콩기름	99.9	1973
우 간 다	커피, 면화, 茶	99.8	1974
잠 비 아	銅	99.6	1973
수 단	면화, 땅콩	98.5	1975
소 말 리 아	바나나, 쇠고기	98.5	1972
리 베 리 아	천광석, 천연고무, 원목	98.4	1974
에 치 오 피 아	커피, 油糧종자	97.6	1974
자 이 래	銅, 다이아몬드	97.2	1974
가 나	코코아, 알미늄, 원목	97.0	1974
브 룬 데 이	면화, 동광석	96.3	1974
통 가	바나나, 코코넛	95.8	1974
자 마 이 카	복사이드, 사탕, 바나나	95.2	1974
西 사 모 아	코코아, 바나나	95.0	1973
모 리 타 니 아	면화, 땅콩	98.5	1975
트리나다드토바고	석유, 사탕	93.6	1975
차 드	땅콩, 쇠고기	94.4	1972
바 하 마	원목	93.5	1974
루 완 타	커피, 茶	93.2	1974
토 고	인광석, 코코아, 커피	91.5	1973
모 리 시 어 스	사탕, 茶	91.4	1973
이 피 불 타	면화, 쇠고기	91.4	1972
베 닌	코코아, 면화	91.3	1972
마다카스카르	커피, 향료, 쌀	90.5	1974
말 리	면화, 쇠고기, 땅콩	90.5	1972
말 라 위	담배, 茶, 땅콩	90.2	1974
니 제 르	땅콩, 쇠고기	87.9	1974
캐 냐	커피, 茶	86.8	1974
파 푸 아 뉴기니	커피, 코코아, 銅	85.7	1973
피 지	사탕	83.4	1973
세 네 칼	땅콩기름, 인광석	77.9	1973
콩 고	석유, 원목	68.0	1973
발 베 이 도 스	사탕, 알콜음료	64.2	1972
중앙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커피, 면화	62.2	1971
시 에 라 레 온	다이아몬드, 철광석, 커피	37.1	1974

資料：UN, *Yearbook of International Statistics*(1977).이 있었다. ⁽¹⁵⁾ 이 協定에 의하면 輸出所得安定基金으로 5年間 3億 7千 5百萬

(15) 로메協定에 있어서 輸出所得 安定化에 관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Hasenpflug, H., "The 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s in the Lomé Convention: A Model Case?" in Sauvant, K. P. and Hasenpflug, H., e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Wilton House, 1977).

〈表 3〉 ACP 국가의 輸出所得安定對象產品(1975)

국명	총수출에 점하는 比重	국명	총수출에 점하는 比重
감비아	땅콩(94)	마다가스카르	커피(30)
부룬데이	커피(86), 면화(3), 가죽(6)	아이보리코스트	원목(29), 커피(23), 코코아(15)
리베리아	철광석(71)	도고	코코아(26) 커피(13)
차드	면화(69)	소말리아	바나나(26)
우간다	커피(66), 면화(15), 茶(5)	카메룬	커피(26), 코코아(23), 원목(12)
루완다	커피(61), 가죽(4)	중앙아프리카	커피(23), 원목(21), 면화(18)
가나	코코아(61), 원목(19)	어퍼볼타	면화(22), 땅콩제품(8)
수단	면화(56), 땅콩(9)	케냐	커피(22), 茶(11)
통가	야자열매(50)	탄자니아	커피(19), 면화(13)
회사모아	야자열매(45), 코코아(28)	말라위	茶(17), 땅콩(7)
콩고	원목(42)	니제르	땅콩(15), 땅콩기름(9)
말리	면화(39), 땅콩(7)	시에라레온	철광석(10), 야자수기름제품(5)
에치오피아	커피(38), 가죽(13)	보츠와나	가죽(9)
다호메이	야자기름제품(34)	피지	코코넛기름(5)
세네갈	땅콩제품(35)		
가봉	원목(32)		

資料 : H. Hasenpflug, "The 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s in the Lomé Convention," K. P. Sauvant and H. Hasenpflug, e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Wilton House, 1977), p. 166.

註 : 주로 1973년 자료임.

u.a. 가 책정되어 每年 7千 5百萬u.a. 가 할당되어 未使用分은 자동적으로 次期로 이월되고 今期에 필요시는 次期할당분에서 20%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품목은 땅콩, 커피, 면화, 코코아, 팜油, 코코넛, 코프라(야자열매 말린것), 피혁, 목재, 바나나, 茶, 그리고 철광석 등의 산품이다.

ACP 국가내에서 이상의 제품들이 총수출에 占하는 比重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예로 감비아의 경우는 총수출에 점하는 땅콩수출의 比重이 1973년에 94%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땅콩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부룬데이의 경우도 총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86%인 커피를 비롯하여 면화와 가죽을 포함시키면 수출소득안정기금의 대상이 되는 산품의 비중이 95%에 이르고 있다. 〈表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ACP 국가들의 주요輸出품목은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큰 산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輸出所得安定을 위한 制度的 장치를 살펴 본다면 혜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품목의 前年度 輸出額이 世界輸出額의 7.5% 以上이 되어야 하며

〈表 4〉 輸出所得安定政策에서 제외된 품목

국 가	제외된 품목의 총수출 占有比(%)	국 가	제외된 품목의 총수출 占有比(%)
시에라레온	다이아몬드(71.0)	토고	인광석(29.2)
소말리아	가죽(50.1)	세네갈	곡물(17.4) 인광석(8.5)
말리	가죽(48.2) 생선(14.1)	콩고	다이아몬드(14.8)
가이아나	복싸이트(47.9)	니제르	가죽(14.3)
중앙아프리카	다이아몬드(44.0)	탄자니아	다이아몬드(10.7) 야채(9.2)
어피불타	가죽(36.9)	카메룬	알루미늄(9.5)
말라위	담배(34.6)	자이레	다이아몬드(5.3)
쟈마이카	알미늄(34.2) 복싸이트(22.7)	나이제리아	주석(4.4)
루완다	주석(31.1)		

資料 : Sauvant and Hasenpflug, ed., *op. cit.*, p. 167.

最貧後進國의 경우는 2.5%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依存드레쉬홀드(Dependence Threshold)이다.⁽¹⁶⁾ 또 다른 메카니즘은 發動드레쉬홀드(Trigger Threshold)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ACP 국가가 EC로 수출하는 대상품목으로부터의 輸出所得이 前年까지 4年間 平均所得을 기준으로 하여 7.5% 以下(最貧後進國의 경우는 2.5% 以下)로 감소하였다면 이 제도의 혜택이 발동하여 補償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제공되는 補償은 無利子融資로서 一定기간 후 갚아야 하지만 最貧후진국의 경우는 이것마저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¹⁷⁾

물론 이러한 제도가 특히 最貧후진국에게 유리하게 운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이 제도는 대상품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철광석 이외의 광물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소득안정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가운데는 ACP 국가의 총수출에 점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산품들이 여러개 있다. 〈表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로 시에라레온의 경우에 다이아몬드는 총수출의 71%를 점하고 있으며 소말리아의 경우에 가축수출이 총수출의 50%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제외된 산품이 총수출에 점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ACP 국가가 10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輸出소득안정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EC와 ACP 국가간 각료회의에서 확대·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만 EC共同農

(16) Threshold 制度에 관해서는 Lomé協定 24條를 참조할 것.

(17) Lomé協定 84條를 참조할 것.

業政策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곡물을 비롯하여 육류, 야채 그리고 우유제품이 제외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EC의 수출소득안정정책의 한계점을 노정시켜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팽석 이외에 다른 광산물을 대상품목으로 포함하여 달라는 ACP 국가들의 주장은 오래 계속될 것임에 상되고 있다.

V. 汎世界的 對後進國政策

以上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C의 對後進國政策은 EC와 歷史的 關係가 깊었던 後進國들을 中心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들과는 援助를 통하여 혹은 差別的 特惠措置등을 通하여 다른 後進國들에 대한 政策과 差等을 두었었다. 이와 같은 差別政策은 1960年代 말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여 1970年代 초에 현격히 나타난 南北問題의 擙頭와 더불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UNCTAD를 中心으로 한 後進國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겸차 資源民族主義가 팽배해 가면서 EC도 종래의 연계후진국을 中心으로 전개했던 대후진국정책의 편향성을 겸차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¹⁸⁾

EC의 對後進國政策轉換은 1972年 10月 파리에서 있었던 頂上會議의 共同聲明에 특히 잘 나타나 있다. ⁽¹⁹⁾ 共同聲明은 EC와 연계된 ACP 국가간의 利益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餘他후진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EC와 後進國과의 貿易去來를 살펴보면 <表5>와 같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2年 후진국으로부터 輸入은 약 245億u.a였고 그 가운데서 ACP 국가로 부터의 輸入은 약 48億u.a로 전체의 19.6%에 불과하였으며 1977年에 이르러서도 전체후진국으로부터의 輸入은 751億u.a였는데 ACP 국가로부터는 전체의 16.6%인 125億u.a를 輸入하여 오히려 그 比重이 낮아졌다. 후진국으로부터의 EC輸入의 大宗은 OPEC 국가로부터의 石油였다.

반면에 EC 국가들의 대후진국수출은 1972年에 190億u.a였고 이 가운데서

(18) 이러한 政策方向의 再調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Pinder, J., "The Community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ssociates and Outsider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12, No. 1(1973).

(19) Pryce, R., *The Politics of the European Community*(Butterworths, 1973), p. 194.

〈表 5〉 EC의 對後進國 무역

(단위 : 億 u.a.)

년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 EC의 輸入	245	319	614	550	699	751
그中 OPEC 국가	118	153	—	334	418	—
" ACP 국가	48	62	105	87	105	125
" 기타후진국	79	104	—	129	176	—
2. EC의 輸出	190	229	352	441	509	618
그中 OPEC 국가	52	68	111	185	235	—
" ACP 국가	40	44	61	81	98	125
" 기타후진국	98	117	180	175	176	—
3. 貿易收支						
(1) 對 전체후진국	-55	-90	-262	-109	-190	-133
(2) 對 OPEC 국가	-66	-85	—	-149	-183	—
(3) 對 ACP 국가	-8	-18	-44	-6	-7	0
(4) 對 기타후진국	+19	+13	—	+46	0	—

資料 : EC Statistical Office 자료.

ACP 국가에의 수출은 21.0%인 40億u.a.였다. 1977年에 EC의 對後進國 총 수출은 618億u.a.였고 對ACP 국가수출은 그 比重이 약간 낮아진 20.1%인 124億u.a.였다.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에 EC는 전체 후진국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72년에 55億u.a.이던 EC의 대후진국 적자는 1973년에 90億u.a., 1974년에 262億u.a.로 불어났고 1976년에 190億u.a. 그리고 1977년에 133億u.a.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의 대부분은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OPEC 국가와의 거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EC는 ACP 국가와의 교역에서 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OPEC 와 ACP 국가군을 제외한 기타 후진국들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EC는 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ACP 국가들에게 베풀었던 차별적 특혜제도의 경제적 귀결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ACP 이외의 후진국들이 EC의 대후진국정책에 불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對後進國 政策轉換을 필요로 했던 EC는 UNCTAD, UNIDO 等의 會議에 적극 참여하여 南北間의 見解差異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ACP 국가 이외의 여러 후진국들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예로 인도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의

후진국들과 品目別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ASEAN 과도 정기적 협의를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알제틴을 비롯하여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C의 後進國에 대한 정책 가운데서 汎世界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一般特惠制度의 채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第1, 2次 UNCTAD 총회에서 논의되고 1970年 UNCTAD 特惠特別委員會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 제도인데 후진국의 공업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해 주는데 목적 이 있었다. ⁽²⁰⁾

일반특혜제도는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제품에 대하여 無差別的,一方的, 그리고 自動的 特惠를 부여하는 것인데, EC가 처음으로 1971年 7月에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²¹⁾ EC가 이 제도를 채택한 이래 이 제도의 수혜국가는 110餘國을 上廻하였다.

일반특혜제도는 一次產品의 輸出集中度가 높아 輸出價格의 변동이 輸出所 得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후진국에게 一次產品보다는 일방적 특혜하에 공업제조품을 생산·수출하여 수출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제도이다. 그러나 이제도가 실시된 이후의 결과를 분석할 때 모두 성공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²²⁾

V. 결 론

EC의 대후진국 정책은 舊식민지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배려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EC 정책은 무역 거래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연유되는 원료

(20) 一般特惠制度의 生成過程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urray, T., *Trade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MacMillan Co., London, 1977), 第1章.

(21) 1973년에 EC에 가입한 영국, 덴마크 그리고 에이스는 1974년 1월부터 EC一般特惠制度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EC制度의 채택은 이들이 태하고 있던 자유무역주의적 일반특혜제도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2) 評價는 다음을 참조할 것.

Ginman, P. and Murray, T.,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Review and Appraisal," in Sauvant, K. and Hasenpflug, H., e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Wilton House, 1977).

Cosgrove-Twitchett, C., "Towards a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in Twitchett, K., ed., *Europe and the World* (Europa Publications, 1976).

Murray, T., "How Helpful is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o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Journal* (1973), pp. 449-455.

와 또 이지역에 투자한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의 원활한 유입을 보장하는 자기이익보호적 입장이 많이 담긴 것이었다. 반면에 舊식민지였던 신생후진국들도 식민지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EC 국가들과 이미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1차적으로 이들과의 우호관계유지가 국가이익에 합당하였던 것이다.

1963년 조인된 Yaoundé協定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63년과 1969년에 걸쳐 조인된 第1次와 2次 Yaoundé協定은 互惠的 근거에서 체결된相互利益保障의 協定이었으며 이것은 아프리카의 연계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EC의 장기적 약속이었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C가 극단적인 정책도 취할 것이라는 각오를 나타내는 정책이었다.

1971년에 발효한 EC와 東아프리카 3국간의 Arusha協定은 EC와 3국간의 교역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協定이었는데 Yaoundé協定과는 달리 경제원조에 대한 條項이 담겨 있지 않아 西아프리카제국과의 協定內容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영국이 EC에 가입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영국의 전식민지들에 대한 EC의 입장을 간결히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73년 EC가 확대되었을 때 Yaoundé協定과 Arusha協定은 時效가 계속 있었지만(兩協定이 1975年 1月31日까지 有効) 英聯邦에 속하는 후진국의 대우 문제 때문에 1973年 中盤부터 브리튼에서 아프리카, 카리비아해 및 太平洋(소위 ACP)諸國과 EC 간에 協商이 시작되어 1975年 1~2月에 토고의 首都 로메에서 소위 Lomé協定을 체결하여 확대된 EC는 아시아의 英聯邦후진국, 즉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46개국과 새로운 정치·경제관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후진국을 포함시킨 Lomé協定이었으나 그것으로부터 제외되어 무역거래상 差別的 待遇를 받아야 했던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후진국들은 EC에 대하여 불만이 적지 않았다.

60년대에 걸쳐 어수선했던 국제경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진국들의 자각이 더욱 크게 일기 시작하였으며 UNCTAD總會 등을 통하여 “南”的立場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囘結된 후진국들의 주장에 대하여 EC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의 공업화를 돋는다는 명분하

에 一般特惠制度를 도입하였고 1971年 7月에 EC가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73年 石油危機와 資源民族主義의 涼中에서 일반특혜 제도가 후진국의 공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기 어려운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974年 UN 資源特別總會에서 新國際經濟秩序의 수립을 주장하고 나온 “77국그룹”으로 대표되는 후진국들이 내놓고 있는 요구를 EC가 어떻게 완화시키며 협상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앞으로 EC의 대후진국정책수립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끝이 될 것이다. EC의 對後進國政策이 後進國들의期待에 어느만큼 副應하며 이를 어떻게 收容할 수 있느냐는 程度에 따라 EC와 후진국간의 관계가 개발협력의 모델로 혹은 新帝國主義의 또 다른 表現으로 간주되고 이해되게 될 것이다.